【별지 제1호】

용 어 의 정 의

1. 관급부품

계약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부품을 말한다.

2. 국방규격(Korean Defense Specification)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3. 기술성숙도 평가(TRA,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기술성숙도 평가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CTEs)들이 어느정도 성숙되어 있는지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4. 기술협력생산

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개발된 무기체계를 외국의 원제작업체로부터 생산면허를 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내구성(Endurance)

내구성이란 유효수명의 척도로서 품목이 그의 계획된 사용수명, 분해수리시점, 또는 재생시까지 고장 없이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6. 부적합(nonconformity)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 요구사항의 불충족을 말한다.

7. 중부적합(major nonconformity)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의 품질경영체제 및 체제 이행 시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인증업체의 품질경영체제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의 요구사항 중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현저한 부족이 있는 경우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 항목 중 1개의 항목기준에서 4건 이상의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 불량품이 출고되거나 출고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합이 있는 경우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의도된 목적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업체 품질경영체제의 부적합이 있는 경우

· 사용자불만이 재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원인조사 및 조치가 없는 경우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과 관련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할 수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연속해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8. 경부적합(minor nonconformity)

부적합사항 중 중부적합 이외의 부적합사항을 말한다.

9. 성능개량

운용 또는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하여 일부 성능 · 기능의 변경 또는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능력을 향상 시키거나 운용유지 측면에서 신뢰성과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위조부품

원제작사 또는 공인된 제작사의 정품처럼 보이게 만든 무단 복제, 모조, 개조 또는 불법으로 제조된 자재, 부품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

11.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군사전략 목표달성을 위해 획득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수준과 무기체계능력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12. 전력화평가

무기체계의 최초배치 후 1년 이내에 소요군에서 각종 작전환경 하에서의 전술적 운용을 통해 최초 기획단계에서 설정된 수준의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력화지원요소를 평가하여 후속 양산 · 구매 및 차기무기체계의 생산 · 개발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13. 정부지정검사원 제도

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의 품질검사원으로 하여금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해당업체의 품질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정부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말한다.

14. 정부지정검사원

정부품질보증계획에 근거하여 품질이 안정된 계약품목에 대해 계약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지정한 검사원

15. 현장검사전담원

정부의 현장 품질보증활동 강화를 위해 납품 전 제품확인감사를 전담하는 검사원 (품질경영체제 평가 및 프로세스검토는 제외)

16. 정부품질보증기관

군수품에 대한 검사조서 발행 등 정부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정부품질관리

군수품 개발자 및 생산자의 품질보증 및 품질경영 활동에 대한 적절성을 정부 또는 정부 품질보증기관이 관리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18. 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위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관련 업체의 기술자료, 공급(연구개발)계획, 일정 등의 제안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19. 제안서(Proposal)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무기체계 등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연구개발을 포함한다), 품질보증, 형상관리, 일정관리 등의 계획과 관련 기술자료를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0. 제조성숙도 평가(MRA,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

제조성숙도 평가는 무기체계 획득의 핵심요소(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의 제조 성숙도를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21. 조달판단

사업관리부서 및 기관의 조달요구품목의 구매추진에 필요한 사전판단 절차로서 계약방법, 조달원, 예산 등을 확인 검토 및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2. 최초생산품

무기체계 등 군수품의 연구개발 후 또는 기술협력 계약 후 최초양산 대상 물량, 업체가 신규로 계약하여 최초로 생산하는 물량을 말한다.

23. 최초양산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사업의 해당사업 계획물량 중 최초에 사업 승인된 물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4. 품질

군수품의 고유특성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25. 품질경영(QM, Quality Management)

개발 및 생산자가 품질과 관련된 방침과 목표의 수립하고, 품질의 기획, 보증과 개선을 통하여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6. 품질관리

군수품이 요구하는 품질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제반 관리활동으로 품질경영과 품질보증 등을 포함한다.

27. 품질관리수준(LQM, Level of Quality Management)

무기체계 체계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사업적 · 기술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정한 정부의 품질관리 수준을 말한다.

28.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

품질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29. 품질인증사격시험

체계개발이 완료되어 최초양산 중인 유도무기의 품질을 납품 전에 확인, 개선 · 보완하기 위해 최초양산된 물량의 일부를 실사격하는 것을 말한다.

30. 품질통제점(QCG, Quality Control Gate)

체계개발 주요단계에서 개발 대상 무기체계의 종합적인 품질 성숙 수준을 평가하여, 후속 개발과정에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31. 품질특성

성능, 기능, 물리적 특성, 관능적 특성, 인간공학적 특성, 신뢰성, 내구성, 정비성, 운용성, 생산성 등 군수품에 요구되는 고유한 특성을 말한다.

32. 하자보고서

하자발생에 대한 발생 경위, 발생 내역, 조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하는 문서이다.

33. 하자의 분류

가. 소재 불량 : 제품에 사용된 원자재 등 소재의 특성이 규격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규격과 다른 소재를 사용한 경우

나. 치수 · 조립 불량 : 제품이 길이 등 규격에서 요구하는 치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립이 규격화 다르게 된 경우

다. 성능 · 내구성 미달 : 제품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성능 · 기능 · 내구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라. 이종품 : 계약이나 규격에서 요구하는 품목과 다른 품목이 납품 또는 장착된 경우

마. 수량부족 : 계약이나 규격에서 요구하는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바. 부품 부족 : 일부 부품 등이 미 장착 또는 미 조립 되어 납품된 경우

사. 포장 · 주기 불량 : 포장이 계약 또는 규격과 상이하거나 잘못 포장된 경우 또는 제품 · 포장 등의 표시나 주기가 잘못 된 경우

34. 하자품

군수품의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한 품질보증도가 국방규격 등 기술 자료에서 규정한 기준, 수치나 수준에 미달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을 말한다.

35. 하자처리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 보고된 하자품의 기술조사와 분석, 군 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조치 등의 과정을 말한다.

36. 시제품

연구개발단계에서 성능 확인 등을 위해 시험 제작된 제품을 말한다.

37. 국방우주품질인증

우주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부품 · 구성품에 대하여 품질 및 신뢰성을 지상에서 확인하는 활동